

강원관광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

개정 2006. 1. 13 , 2010. 03. 1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수업적평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교수업적의 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교수업적 평가영역 및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평가라 함은 전임교수의 학문연구, 학생 교육, 학생지도의 활동실적 평가를 말한다.

② 교수업적 평가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문연구영역 : 연구(국내 및 국외 연구논문 발표, 게재 저서, 번역, 특허 등), 연수, 연구프로젝트참여 등 전공학문의 지성적,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.

2. 학생교육영역 :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, 강의, 실습, 수업평가 등의 제반 교육활동 사항.

3. 학생지도영역 : 학생취업, 학생상담, 특별활동지도, 교내·외 봉사 또는 학교발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여하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.

제 4 조 (교수업적 평가대상) ① 교수업적 평가대상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한다.

② 명예교수, 객원교수, 겸임교수, 외국인교수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 2 장 심의기구

제 5 조 (교수업적 평가위원회) ① 교수업적을 관리·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교수업적평가위원은 총장,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 (개정 2010.3.1)

③ 교수업적 평가위원의 임기는 보직임용 기간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위촉한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0.3.1)

④ 교수업적평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업적관리·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교수업적관리 자료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수업적관리 서식결정에 관한 사항
4. 교수업적·평가 관련규정의 개·폐 발의에 관한 사항
- ⑤ 교수업적평가위원은 교수업적평가 영역 중 교수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교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업적평가

제 6 조 (교수업적평가기간) 업적평가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기간으로 한다. 단, 승진심사 기간은 승진 대상 연월일을 기준으로 최저 승진소요 년수만을 평가한다.(개정 2010.3.1)

제 7 조 (교수업적평가) ① 교수업적평가위원은 심사대상 교수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교수업적 평가표(별지제1,2호서식)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세부 기준(별지제3호서식)을 총장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(개정 2010.3.1)

② 업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(교수업적평가 방법과 절차) ① 총장은 평가심사대상 교원에게 임용시기 4개월전에 교수업적평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. (개정 2010.3.1)

② 임용, 승진 및 재임용대상 교원은 임용일 3개월 이전에 교수업적평가신청서(별지제4호서식)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교수업적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 (개정 2010.3.1)

④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아 임용제청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. (개정 2010.3.1)

⑤ 총장은 교수업적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표와 이에 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표를 교수업적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(개정 2010.3.1)

⑥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 (교수업적 평가기준 및 점수) ① 교수의 승진을 위한 업적평가는 승진소요연수와 연구실적이 2점(200%)이상 충족되어야 한다.

② 재임용평가시에는 재임용기간과 연구실적이 2점(200%)이상 충족되어야 교수업적평가를 할 수 있으며,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3개의 평가영역 총점 합계를 충족하여야 한다. 또한, 평가영역 중 2개이상 항목에서 해당하는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승진 및 재임용대상에서

제외한다.

③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0.3.1)

평가 구분	승진				평가 구분	재임용			
	학문연구 (20점)	학생교육 (45점)	학생지도 (35점)	합계 (100점)		학문연구 (20점)	학생교육 (45점)	학생지도 (35점)	합계 (100점)
전임강사 - 조교수	10점이상	29점이상	21점이상	60점이상	전임강사	10점이상	29점이상	21점이상	60점 이상
조교수 - 부교수	10점이상	32점이상	23점이상	65점이상	조교수	10점이상	30점이상	22점이상	62점 이상
부교수 - 교수	10점이상	35점이상	25점이상	70점이상	부교수	10점이상	31점이상	23점이상	64점 이상

제 10 조 (연구실적심사) ① 연구실적심사는 교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 심사하되 심사기간내에 제출되어 발간되지 못한 연구실적으로 게재 및 발간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당해연도 재임용 및 승진일 60일전까지 연구실적이 게재 및 발간되어야 하며, 예정증명서의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제9조의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및 평가점수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연구성과물로 인정되는 게재인정 학술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다.

1. 국제저명 학술지(SCI, A&HCI, SSCI) 및 기타 국제 학술지(SCIE, Index Medicus)
2.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
3. 학술진흥재단 비 등재 전국규모 학술지
4. 본 대학 논문집

③ 전항의 학술지중 1,2호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은 심사를 생략한다.

④ 전공분야의 교수활동에 대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될시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

㉠ 특허취득

- 발명 : 상한 인정률 : 국제 1건 200%, 국내 1건 100%
-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: 건당 상한 인정률 100%

⑤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출판물은 중복 평가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업적서류 제출) ①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인 전임교수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의 교수업적평가신청서를 지정된 기일내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수업적평가위원은 동 규정 제6조에 의한 업적확인 및 평가를 한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3.1)

제 4 장 교수업적평가 관리

제12조 (교수업적 평가결과의 활용)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승진, 재임용(정년보장교수 임용 포함)
2. 신규임용 (계약제 임용)
3. 성과급(또는 연구보조비) 지급
4. 우수교육교수 및 우수연구교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자료
5. 기타 교수업적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

제13조 (교수업적평가 업무분장 및 관리) ① 교수업적 평가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하며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적 관리·평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 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0.3.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(별지 제1호서식) (제7조1항관련) (개정'06.1.13, 2010.3.1)

교수업적(승진,재임용)평가표

피평정 대상자		평 정 자 (교수업적평가위원)				
소 속		위원장	위원	위원	위원	위원
직 급						
성 명						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	
			A	B	C	D	E	
1	학문연구 (20점)	① 연구실적	10	10	8	6	4	0
		② 연구실적물의 질	5	5	4	3	2	0
		③ 삭제						
		④ 교수연수실적(연수 및 산업체현장연수)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	5	5	4	3	2	0
		소 계	20					
2	학생교육 (45점)	① 강의이행실적(휴.결강)	5	5	4	3	2	0
		② 책임강의시수	5	5	4	3	2	0
		③ 강의여건조성실적 및 정원관리	15	15	12	9	6	0
		④ 교육과정개발실적 및 산학군관협력실적	10	10	8	6	4	0
		⑤ 교원지위향상실적(포상 및 징계사항)	10	10	8	6	4	0
		소 계	45					
3	학생지도 (35점)	① 학생취업 지도실적	15	15	12	9	6	0
		② 현장실습지도/동아리지도 교수활동실적	10	10	8	6	4	0
		③ 사회봉사활동 / 대학발전기여 실적	10	10	8	6	4	0
		소 계	35					
총 계		100						
적격 여부 판정		적격() 부적격()						

(별지 제2호서식) (제7조1항관련) (제정'05.12.1)

예·체능계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표

구분	연구업적	평점	
미술	가. 국제적 미술대전, 산업디자인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입선 : 1회 ◦특선이상 : 1회 ◦국제전 출품 : 1회 	0.5점 1점 0.5점	
	나. 지역규모 공모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특선이상 : 1회 ◦입선 : 1회 	0.5점 0.25점	
	다. 공인된 개인전 (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실내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지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개인전 : 1회 ◦2인전 : 1회 ◦기획전 : 1회 *기획전의 경우 전시회 안내장에 「기획전」 이라고 명시되고 참여작가 개인별 2점이상 출품되는 기획전	1점 0.7점 0.5점	
	라.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입선 : 1회 ◦특선이상 : 1회 *공인된」의 범위는 출품작가들이 해당분야의 전공자들인 단체 전 및 공모전에 한정한다.	0.5점 0.5점	
	마.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: 1회 * 전시회 안내장에 「초대전」, 「초대작가전」 으로 명시했을 경우의 초대전	0.7점	
	바. 국제전 심사위원 : 1회	1점	
	사.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미술대전,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: 1회 ◦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: 1회 ◦시.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	1점 0.5점 0.25점	
	아. 특허,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출원	1점	
	체육	가.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: 1회	1점
		나. 올림픽 경기출전 : 1회	1점
다. 전국대회 입상 : 1회		0.5점	
라. 국제공인 심판자격 : 1회		1점	
창작 실기 활동	가.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: 1회	1점	
	나. 전국을 단위호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: 1회	0.5점	
음악	가.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.독주회.개인작곡발표회 : 1회	1점	
	나.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:1회	0.7점	
	다.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이상,3 중주이상,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: 1회	0.5점	
	라.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	0.3점	
기타	가. 학.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: 1회	2점	

(별지 제3호서식) (제7조1항관련) (개정'06.1.13, 2010.3.1)

교수업적평가세부기준표

평점 항목	평가 기준								비고	
	세부평점항목	등급	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							
학문 연구	①연구실적	구분	승진			재임용				
			전임 ~ 조교수	조교수 ~ 부교수	부교수 ~ 교수	전임 ~ 조교수	조교수 ~ 부교수	부교수 ~ 교수	교수	
		A	5점이상	5점이상	7점이상	4점이상	5점이상	5점이상		
		B	4점이상	4점이상	6점이상	3점이상	4점이상	4점이상		
		C	3점이상	3점이상	5점이상	2점이상	3점이상	3점이상		
		D	2점이상	2점이상	4점이상		2점이상	2점이상		
		E			2점이상					
		교직원 인사규정 제13조7항에 의거 연구실적(승진, 재임용포함) 200%가 반드시 충족될 시 평가하는 항목임								
	②연구실적 물의 질	A	국제학회지, 학술진흥재단(등재및후보)지 / 예체능 분야창작, 전시, 초대, 전시, 출판 특선 및 국내외 특허(실용신안) / 석·박사학위논문							
		B	전국규모논문집 / 저서							
		C	본 대학 논문집/ 타대학 논문집/ 학술발표논문집							
		D	기술지도보고서 / 현장실습보고서							
		E	기타							
	③소지학위의 종류		삭제							
	③교수연수 실적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실적	A	연수실적 30시간 이상(삭제) / 산업체현장연수 2월 이상 / 교육과학기술부 등 공인된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(1건 이상)							
		B	연수실적 20시간 이상(삭제) / 산업체현장연수 1월 이상 / 광역단체, 기초단체 등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(1건 이상)							
		C	연수실적 15시간 이상(삭제) / 산업체현장연수 15일 이상 / 기초단체 및 공인연구기관 프로젝트계획서 제출실적(1건 이상)							
		D	연수실적 10시간 이상(삭제) / 산업체현장연수 10일 이상							
E		연수실적 5시간 이상(삭제) / 산업체현장연수 10일 미만								
		※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관(산업체 포함) 및 학회 등의 공인된 연수 실적을 말함.								

평점 항목	평가 기준			비고
	세부평점항목	등급	평점 항목 세부 기준	
학생 교육	① 강의이행 실적 (휴·결강)	A	휴·결강 횟수가 1~2회 / 대학보직(처장급이상) 경력 1년 이상	
		B	휴·결강 횟수가 3~4회 / 대학보직(학과장급이상) 경력 1년 이상	
		C	휴·결강 횟수가 5~6회 / 대학보직(학과장급이상) 경력 6월 이상	
		D	휴·결강 횟수가 7~8회	
		E	휴·결강 횟수가 9회 이상	
	② 책임 강의 시수	A	책임강의 시수 100% 충족(총시수/교수기본시수 : 강사료지급 시수)	
		B	책임강의 시수 80%이상 충족	
		C	책임강의 시수 60%이상 충족	
		D	책임강의 시수 40%이상 충족	
		E	책임강의 시수 20%이상 충족	
	③ 강의여건 조성 및 정원관리	A	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80%이상 / 교수 1인당 신입생 충원 수 15명 이상	
		B	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70%이상 / 교수 1인당 신입생 충원 수 12명 이상	
		C	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50%이상 / 교수 1인당 신입생 충원 수 10명 이상	
		D	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30%이상	
		E	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10%이상	
			※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의외(편제정원의 정원의, 산업체위탁생, 군위탁생)를 포함 하되, 산업체와 군위탁생은 신입생 충원수를 편제정원에 합산함. $\text{신입생충원율} = \frac{\text{신입생충원수(정원의외포함)}}{\text{편제 정원(산업체위탁생, 군위탁입학생 포함)}} \times 100(\%)$	
	④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군관 협력실적	A	산학군관 연계교육과정개발실적 5회 이상/ 산업체위탁교육생 20명 이상 유치 / 산학군관협력체결 실적 3개 업체 이상	
		B	산학군관 연계교육과정개발실적 4회 이상/ 산업체위탁교육생 15명 이상 유치 / 산학군관 협력체결 실적 2개 업체 이상	
		C	산학군관 연계교육과정개발실적 3회 이상/ 산업체위탁교육생 10명 이상 유치 / 산학군관 협력체결 실적 1개 업체 이상	
		D	산학군관 연계교육과정개발실적 2회 이상/ 산업체위탁교육생 5명 이상 유치	
E		산학군관 연계교육과정개발실적 1회 이상/ 산업체위탁교육생 5명 미만 유치		
⑤ 교원지위 향상실적 (포상 및 징계사항)	A	평가기간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 / 훈 포장 및 교육부총리, 장관관급 이상 표창		
	B	평가기간 중 징계 사실(경고) 있는 자 / 광역단체장, 총장 이상 표창		
	C	평가기간 중 징계 사실(견책) 있는 자 / 기초단체장 이상 표창		
	D	평가기간 중 징계 사실(감봉) 있는 자 / 사회단체장 이상 표창(공로패)		
	E	평가기간 중 징계 사실(정직) 있는 자(표창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)		

평점 항목	평가 기준			비고
	세부평점항목	등급	평점 항목 세부 기준	
학생 지도	① 학생 취업 지도 실적	A	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8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미만) / 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7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이상)	
		B	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7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미만) / 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6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이상)	
		C	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6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미만) / 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5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이상)	
		D	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5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미만) / 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4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이상)	
		E	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4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미만) / 학생 취업률이 최근 2년간 30%이상인 학과 교수(졸업생 50명 이상)	
	② 현장실습 지도 및 동아리지도 교수활동실적	A	학생현장실습 지도실적 4회 이상 / 동아리 지도교수 2년 이상 / 병영체험 지도실적 4회 이상	
		B	학생현장실습 지도실적 3회 이상 / 동아리 지도교수 1년 이상 / 병영체험 지도실적 3회 이상	
		C	학생현장실습 지도실적 2회 이상 / 동아리 지도교수 6월 이상 / 병영체험 지도실적 2회 이상	
		D	학생현장실습 지도실적 1회 이상 / 동아리 지도교수 6월 미만 / 병영체험 지도실적 1회 이상	
		E	학생현장실습 지도실적 1회 미만 / 동아리 지도교수 실적이 없는 자 / 병영체험 지도실적 1회 미만	
			※ 해당 동아리가 대회 입상한 경우 대회 1회당 1점, 2인이상 지도하는 경우 1/n	
	③ 사회봉사 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실적	A	사회봉사활동 10시간 이상 / 장학, 기부금, 기자재 200만원 이상 유치 및 외부 기관단체 납부 실적 / 국제 기구 및 정부기관 지원 활동(임원 자문 및 심사)	
		B	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상 / 장학, 기부금, 기자재 100만원 이상 유치 및 외부 기관단체 납부 실적 / 광역자치단체, 대학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활동(임원 자문 및 심사)	
		C	사회봉사활동 3시간 이상 / 장학, 기부금, 기자재 100만원 미만 유치 및 외부 기관단체 납부 실적 / 일반기업지원 활동(임원 자문 및 심사)	
		D	사회봉사활동 1시간 이상	
E		사회봉사활동 1시간 미만		

※ 평가점수는 세부평점 항목별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
연구실적 목록

순번	제 목(요 약)	발표년월일	발표기관지	저 자		매수	비고
				단독	공동		
1	제)						
2	제)						
3	제)						
4	제)						
5	제)						
6	제)						

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

년 월 일

작성자 :

(인)

강원관광대총장 귀하

학문연구

순번	구분	제목	일자	항목별 세부내용	첨부서류	비고
1	연구실적					#연구 실적 목록 대체 가능
2	연구실적물 의질					
3	삭제					
4	교수연수 실적 및 연구프로 젝트참여 실적					

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

년 월 일

작성자 :

①

강원관광대총장 귀하

학 생 교 육

순번	구 분	제 목	일 자	항목별 세부내용	첨부서류	비고
1	강의이행 실적					#연구 실적 목록 대체 가능
2	책임강의 시수					
3	강의여건 조성실적 및 정원관리					
4	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군관협 력실적					
5	교원지위향 상실적					

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

년 월 일

작성자 :

(인)

강원관광대총장 귀하

학 생 지 도

순번	구 분	제 목	일 자	항목별 세부내용	첨부서류	비고
1	학생취업 지도실적					
2	현장실습지 도/동아리지 도활동 실적					
3	사회봉사활 동/대학발전 기여실적					

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

년 월 일

작성자 :

(인)

강원관광대총장 귀하